

2017. 4. 10. 의결, 2017. 7. 1. 시행

2021. 12. 6. 수정, 2022. 3. 1. 시행

## 36 도주·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

도주·범인은닉범죄의 양형기준은 도주(형법 제145조 제1항), 특수도주(형법 제146조), 도주원조(형법 제147조), 간수자의 도주원조(형법 제148조), 범인은닉(형법 제151조)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 01 | 도주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도주	- 6월	4월 - 8월	6월 - 1년
2	특수도주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4년
3	도주원조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5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손괴·폭행·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아자</li> <li>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</li> <li>동종 누범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극 가담</li> </ul>	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li>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(2유형)</li> </ul>

## 02<sup>1</sup> 범인은닉·도피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범인은닉·도피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
구분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농아자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누범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li>●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제적 대가의 약속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01<sup>1</sup> 도주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구성요건	적용법조
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	형법 제145조 제1항
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	형법 제146조
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	형법 제147조
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	형법 제148조

### 02<sup>1</sup> 범인은닉·도피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구성요건	적용법조
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	형법 제151조

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01 | 도주

#### 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체포자,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 -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다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라. 처벌불원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, 피해자나 유족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)이 처벌불원의 법적·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,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,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, 내용,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,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.

**마.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**

-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(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/3 이상)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**바.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**

-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,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·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.

## 02<sup>1</sup> 범인은닉·도피

**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**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본범과 사실혼, 연인,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,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  - ‘죄를 범한 자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

#### 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(예: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‘바지사장’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)
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
  -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다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라.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01<sup>1</sup>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02<sup>1</sup>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

## [공통원칙]

### 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03 | 경합범의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## Ⅱ. 집행유예 기준

### 01 | 도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●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</li> <li>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손괴·폭행·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</li> <li>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●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li>●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(2유형)</li> </ul>

### 02 | 범인은닉·도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</li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제적 대가의 약속</li> <li>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</li> <li>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●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